

#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ACSS of Canada and FedACH of America as a  
Electronic Payment System

이병렬(Byeong-Ryul Lee)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II.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 ABSTRACT        |
| IV.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동정산결제, 중앙은행, 지급, 위험

## I. 서론

최근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 및 소비자의 결제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급결제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소액결제시장에서 수표 등 전통적인 결제수단의 이용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전자방식의 지급수단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다양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소액지급방식에서는 임금지급 등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현금 및 수표 등 지폐결제중심에서 전자결제방식중심으로 지급시스템의 혁신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액결제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한국과 양자적 FTA(자유무역협정)를 이미 체결한 미국<sup>1)</sup>과 캐나다<sup>2)</sup>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1975년만 해도 현금이나 수표 등 지폐중심의 결제수단이 거의 90%를 육박하였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카드 및 전자자금이체 등의 사용비중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sup>3)</sup>

예를 들면, 캐나다는 지난 20년간 비 현금 지급수단(건수 기준)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09년에 이미 전체 지급수단 중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80%를 초월한 반면, 수표의 이용비중은 16%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협회(CPA)를 통한 전자자금이체거래는 2004년 11억 건에서 2014년 20억 건으로, CPA의 거래인 이메일 자금이체는 2004년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2014년 3백만 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무역학에서 지금까지 연구관심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상학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편, 미국의 소액, 소비자간 거래에 이용되는 전자지급시스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FedACH거래는 2015년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일 평균 3천 7백만 건에 미화 580억 달러를 처리함으로써 매년 230억 건에 40조 달러 이상을 거래하여 미국 전자금융거래의 약 20%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성장하였다. 초기 FedACH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정부와 은행간 거래는 2015년 기준 전체 거래규모에서 약 8%를 차지하여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상업용 거래는 92%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1) 미국은 2010년 7월 '지급 및 청산결제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 캐나다는 지급결제협회(CPA)를 중심으로 2010.2월 소액결제제도 발전을 위한 'vision 2020'을 수립하여 2020년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3)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소액결제의 세계 트렌드", 「지급결제정보」, 2008.8, pp.11-23.

4) [http://www.cdnpay.ca/imis15/pdf/pdf\\_publications/CPA\\_Annual\\_Report.2014\\_pdf](http://www.cdnpay.ca/imis15/pdf/pdf_publications/CPA_Annual_Report.2014_pdf), 2 Jan., 2016.

상승함으로써 FedACH도 개인, 기업 및 정부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적인 지급시스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따라서 최근 그 이용이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한국의 오랜 무역시장이자 세계 자유무역의 바로미터역할을 하는 미국의 제도와 국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중요한 교역파트너로서 무역 전략적인 면에서 비중이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제도를 소액 전자자금이체시스템과 운용방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동일한 북미지역권으로써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발전해왔으면서도 국제 무역관습은 미국과 양분하고 있는 영국의 상관습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 매우 시사성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액전자결제시스템 중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Fed Automated Clearing House : FedACH)와 캐나다의 자동정산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 ACSS)를 중앙은행(주관기관)의 역할, 제도적 기반구축, 참여자 및 참여방법,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후 전자지급시스템의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선행연구분석

한국에서 미국의 전자지급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캐나다 지급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어 오지는 않았다. 이는 그동안 한국과 국제교역실적 및 관계가 학술적 연구풍토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행연구분석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 연구로서는 백미연<sup>5)</sup>(2006)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지에 미국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인 ACH(Automated Clearing House)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류창원<sup>6)</sup>(2008)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집에서 각국에서 소액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는

5)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서비스 제공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6호, 2006.10.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바 있다.

진재석<sup>7)</sup>(2008)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지에서 미국의 지급결제제도와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한국은행<sup>8)</sup>(2008)은 소액결제의 세계 트렌드를 조사하면서 지급결제산업의 변화과정, 역사 및 소액결제시장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소액결제시장이 현금과 수표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지급결제회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직적 통합을 하는 등 구조변화를 겪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은행<sup>9)</sup>(2011, 2014)은 ‘지급결제 조사자료’지에서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을 뿐 거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에 관한 분석도 한 바 있다.

이병렬<sup>10)</sup>(2004.9)은 ‘국제상학’지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권한 거래에 대한 주요쟁점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연구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국 법원의 판례결과를 인용하여 무권한 거래의 책임분담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 연구자<sup>11)</sup>(2015)는 ‘전자무역연구’에서 미국의 ACH와 유럽의 SEPA를 지급시스템, 제도적 기반, 운영정책 및 위험할당에 관한 주요쟁점을 분석하였다. 김서영<sup>12)</sup>(2011.7)은 ‘지급결제와 정보기술’지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및 주요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정미<sup>13)</sup>(2012)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운영,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 연구자는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운영, 지급결제관련법제 규정 (by-law)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선행연구로서는 Geva<sup>14)</sup>(2003)가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서 ACH에 대한 관련규정과 지급메카니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Connor<sup>15)</sup>(2003)은 캐나다의 소액지급시스템인 ACSS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분석하고 지급구조와 위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

6) 류장완, “소액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 진재석,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5호, 금융결제원, 2009.1.

8) 한국은행, “소액결제의 세계 트렌드”, 『지급결제정보』, 2008.8.

9)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지급결제정보』, 2010: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1.1.

10) 이병렬, “신 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 19권 제3호, 한국 국제상학회, 2004.9.

11) 이병렬, “유럽의 단일유로화지급지역(SEPA)과 미국의 자동교환정산원(ACH)간의 비교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12) 김서영, “지급결제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3호, 금융결제원, 2011.1 ;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5호, 금융결제원, 2011.7 ; “주요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망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0호, 금융결제원, 2012.10 ;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2013.7.

13)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7호, 2012.1.

14) Benjamin Geva,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New York: Matthew Bender, 2003.

15) Sean O’ Connor, “Structural Risks and Benefits of Tiered Arrangements: The ACSS”, January 2003.

고 캐나다인 지급협회(2014, 2015)는 연례보고서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위해서 전략위험, 운영위험, 금융위험, 결제위험, 인적자원관리 및 시스템 및 IT 및 제도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sup>16)</sup> 마지막으로 Chapman & Chiu<sup>17)</sup>(2015)는 캐나다 지급시스템의 운영기관인 지급협회(CPA)의 역할, 정책목표, 위험관리 및 주요한 지급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 2.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점 규명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미국 및 캐나다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전자결제시스템인 FedACH와 ACSS간의 주요쟁점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국내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적용,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면에서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한 차별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소액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실태조사 및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소액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상거래에 직접 적용하였을 경우 표출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라기보다는 관련국가의 지급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선행연구의 상거래 적용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노출방지정책 및 책임할당부분 등 중요쟁점을 비교분석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층 심화된 연구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액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학술적인 연구이기보다는 각 국의 개별결제시스템을 고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한 경제환경하에서 당사자간의 거래가 특정한 국내에 한정하여 발생되기보다는 국경을 초월하여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에는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및 고객간에는 더욱 빈번히 책임분담과 위험관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비교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차별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6)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2014 Annual Report.

17) James Chapman & Jonathan Chiu,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2, September 2015.

### Ⅲ.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 1. 중앙은행과 지급협회의 지위

캐나다지급협회(Canadian Payment Association : CPA)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캐나다금융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금융 인프라로서 ACSS를 소유·운영하고 있으면서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 CPA Act)의 지배를 받고 있다. CPA는 캐나다 중앙은행, 예금금융기관, 비 예금금융기관(생명보험, 증권 딜러, 뮤추얼펀드 등) 및 인증 받은 외국은행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면서 평균 영업일당 약 1,800억 캐나다달러를 처리하고 있다. 재무부장관에게 감독할 책임이 있는 CPA의 주 역할은 금융기관간 지급정산을 위해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면서 새로운 지급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sup>18)</sup> 또한 회원금융기관간의 지급정산결제를 규율하는 규칙과 표준(Rules and Standard)을 제정 및 이행함으로써 외국 및 국제결제시스템과 캐나다결제시스템간의 상호거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CPA업무를 실제 관리 및 감독업무는 케네디언 지급법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가 하고 있다. 1년에 5번 개최되는 이사회는 ACSS뿐 아니라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도 소유·운영하고 있어 소액과 거액을 별개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다르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sup>19)</sup> CPA이사회는 CPA회원들이 선출하는 5명의 사내이사와 의장을 포함하여 7명의 사외이사(independent)로 구성된다. 이와 별개로 CPA의 사장 및 CEO가 추가되어 사실상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내이사 중 2명은 지정된 국내 중요은행(D-SIB)의 대표자들 중에 선임한다. 이사회 본사는 오타와에 있으며 약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사회는 CPA 업무 중 정책과 전략수립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지급협회의 지급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즉, 이사회는 지급협회에 필요한 전략계획과정, 전략지시 및 우선사항을 수립하여 전략지시와 일치하는 정책 및 예산을 승인한다.

둘째, 정산결제시스템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CPA의 원만한 운영을

18) 캐나다 지급협회는 ACSS 외 거액자금이체시스템인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와 미국 거액달러 교환시스템인 USBE(US Bulk Exchange)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CPA Rules Section K에서 규정하는 USBE의 결제는 뉴욕에 있는 코레스(correspondent)은행이 수행하며 캐나다 중앙은행은 결제메카니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http://www.cdnpay.ca>, 21 Jan., 2016.

19) James F. Dingle, "Planning and Evolution: The Story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1980-2002", A Joint Publication of the Bank of Canada and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May 2003, pp.20-23.

위하여 이사장을 임명하고 수권된 정책을 채택한다. 또한 이사회는 수행평가정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보상한다. 또한 협회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주요한 위험을 확인 및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이사들과 직원들의 지휘코드(Code of Conduct for Directors and Officers) 승인 및 준수여부를 감독(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직 구조(Organizational Framework)를 설립하여 유지할 책임이 있다.<sup>20)</sup>

그리고 캐나다 지급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연방규정과 캐나다 지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모든 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급협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신용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및 다른 금융기관들도 캐나다지급협회가 창립된 1980년 이후부터 CPA회원의 자격이 있다. 2001년 11월부터 캐나다 지급법은 회원의 자격을 투자거래협회의 회원인 생명보험회사, 유가증권거래자와 투자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통화시장 상호금융까지 확대하였다. CPA는 지급도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절차 및 회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산업유관협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sup>21)</sup>

한편, 지급협회가 운영하는 캐나다의 ACSS와 달리 미국의 FedACH는 정부의 대리인역할을 하는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방준비은행은 1913년 설립 초기에는 회원은행에게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현재는 모든 예탁금융기관과 정부에게 다양한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비회원은행, 상호저축은행, 저축 대부협회 그리고 신용조합에게까지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FedACH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원격지에 있는 소규모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예탁금융기관의 준비 및 정산잔고계정을 관리하고 수표추심, 전자자금이체, 유통과 수신통화와 같은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에는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1980년에 통화감독법(MCA)이 제정되어 연방준비은행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로 발생한 전가이익과

20) 또한 다음의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첫째, 위험, 회계감사, 금융위원회(Risk, Audit & Finance Committee)는 위험감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그의 책임을 충족시키도록 도와주며 금융관리, 프로젝트, 사업영역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한다. 둘째, 통제 및 지정위원회(Governance and Nominating Committee)는 이사회가 CPA의 이행코드 및 행동지침, 지정 및 이사자격, 이사교육, 오리엔테이션,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추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잘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인적 자원 및 보상위원회(Human Resources and Compensation Committee)는 이사회에 모집, 평가, 이사장 및 CEO의 보상을 권고하며 협회의 인적자원정책, 직원의 이익, 직원의 고용승계계획, 연금, 보상정책 및 협회의 이행관리프로그램 등을 제시한다. 넷째, 기술/현대회위원회는 이사회가 CPA의 기술의 전체역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데 도와준다. 다섯째, 관리자문위원회(Management Advisory Committee)는 제한된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외 구체적 프로젝트위원회(Project Specific Committee)와 회원 협의회(Member Advisory Council)을 두고 CPA회원들을 위한 상담, CPA정산, 결제시스템에 대한 이사회에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1) [http://www.cdnpay.ca/imis15/eng/Membership/Member\\_List/eng/mem/Member\\_List](http://www.cdnpay.ca/imis15/eng/Membership/Member_List/eng/mem/Member_List), 16 Jan., 2016.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직·간접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연방준비은행은 중립적이고 신뢰할만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서 다양한 민간 정산 제도를 지원한다. 즉, 의회는 1987년 촉진 자금이용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등을 제정하여 수표처리 및 채권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 뿐 아니라 수표추심채널을 통해서 처리하기 적합하지 않는 추심항목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급망을 제공함으로써 지급시스템의 적극적인 참여자, 운영자 겸 감독자의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22)</sup>

셋째, 미국 결제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은 탁월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재무성 수표지급 및 발행, 전자지급처리, 정부 유가증권 상환, 신용창출, 보관 그리고 정부지급 등 재무적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캐나다처럼 다양한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sup>23)</sup>을 이용한다. 이러한 자문위원회들은 연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연방준비이사회의에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 제도적 기반의 구성과 적용

캐나다의 ACSS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캐나다 지급법(Canada Payment Act)이 있다. 캐나다 지급법은 전신인 캐나다 지급협회법(Canada Payment Association Act)이 1980년에 제정되어 2001년에 캐나다 지급법(이하 CP Act 또는 지급법)으로 개정되었고, 지금의 지급법의 내용은 2003년에 수정되었다. 지급법은 ACSS를 포함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인 LVTS까지도 규율하고 있어 거액과 소액결제시스템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과 다르게 하나의 법아래 모든 전자결제시스템이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급법은 총 2개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자동화된 정산지급시스템(ACSS)의 운영기관인 캐나다지급협회에 대해서, 제2장은 지정된 지급시스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지급법은 캐나다 중앙은행에게 지급시스템의 위험을 통제할 목적으로 정산 결제시스템을 감독

22) [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s/pfs\\_about.htm](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s/pfs_about.htm), 17 Jan., 2016.

23) 여기에는 첫째,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가 있다. 연방 자문 위원회(FAC)는 12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관할권 내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조언한다. 동 위원회는 년 4회, 2월, 5월, 9월 그리고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워싱턴 D.C에서 항상 개최된다. 그러나 개최시키는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의 편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둘째, 년 2회 개최되는 지역예탁기관 자문위원회(the Community Depository Institutions Advisory Council : CDIAC)은 은행, 저축 기관대표, 그리고 12개의 연방 준비 은행이 설립한 지역자문 위원회 소속 신용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문위원회(the Community Advisory Council : CAC)는 연방자문위원회(FAC)와 지역예탁기관 자문위원회(CDIAC)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CAC도 년 2회 개최되며 워싱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참석한다. 부가적인 정보는 Federal Register 공지에서 알 수 있다.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4)</sup> 그리고 CPA 이사회에서는 캐나다 지급협회 규정 No.3-지급항목 및 자동화된 정산결제시스템(Canada Payment Association By-law No.3-Payment Items and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을 두고 ACSS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CSS시스템운영 및 정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로 접근하는 행위는 「By law」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의 소액 전자결제를 규율하는 1978년 연방법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규정 E」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CPA by-law No.3」의 내용도 2003년에 개정됨에 따라 ACSS의 적용과 직접관계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개정되었다. 「CPA by-law No.3」는 총 2개장 6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2장에서 ACSS운영과 책임 및 ACSS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sup>25)</sup> 이와 별개로 CPA회원 기관들이 지급을 교환하기 위하여 ACSS를 포함하여 캐나다 지급법의 규율대상인, LVTS, USBE시스템을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급시스템 절차를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의 FedACH거래 중 소액결제는 1978년 연방의회는 연방전자거래법(EFTA of 1978, 이하 연방법)의 지배를 받고 거액결제는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 : UCC 4A)의 지배를 받는다.<sup>26)</sup> 연방법은 자동교환정산원(FedACH)이 1970년에 이미 구축되어 운용 중에 있었고 전자지급망(EPN)의 전신인 NYACH가 1975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1978년에 소비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으로 입법되어 FedACH의 지급이체와 출금이체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책임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 E」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자체 규칙을 제정할 행정적 권한에 따라 「규정 E」에 근거하여 불행하는 「공식해석서」(Official Staff Commentary on Regulation E)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총 12개의 장(OC)로 구성된 「운영회람」(Operating Circular : OC)<sup>28)</sup>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FedACH는 제4장(OC)에서 규정하고 있다.

24) 「CPA by-law No.3」를 제외한 모든「by-law」는 재무부장관이 승인을 한다. 재무부장관은 현존하는 규칙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CPA규칙을 검토할 권한 또는 해당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재무부장관은 「by-law」, 규칙 및 표준들을 폐지, 수정 그리고 작성할 명령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 명령이 지정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명령을 발행하기 전에 재무부장관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25) Canada Payment Association By-law No.3 26(a)-(d).

26) Thomas C. Baxter, Stephanie A. Heller and Paul S. Turner, ABCs of UCC, American Bar Association, 2006, pp.35-40.

27) Benjamin Geva,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NewYork: Matthew Bender, 2003, pp.4.01-8.

28) 이병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및 정책적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3, pp.39-40 : <http://www.nacha.org/ACHNS>, 25 Jan., 2016.

### 3. 참여기관과 역할

캐나다의 ACSS는 미국의 FedACH보다 다소 늦은 1984년에 도입된 이후 다양한 지급항목을 처리하고 있는데 캐나다 지급협회(CPA)회원들간에 이루어진 거래금액을 추적하거나 참여자로부터 발생된 잔액을 결정하는 정보시스템의 역할을 한다.<sup>29)</sup>

ACSS참여자는 크게 제1참여기관 및 제2참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참여기관도 직접정산기관<sup>30)</sup>, 그룹정산기관<sup>31)</sup> 및 정산대리기관<sup>32)</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3)</sup> 이를 금융업종별로 살펴보면 8개의 상업은행, 2개의 그룹정산기관, 1개의 지방정부저축기관,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The Bank of Canada)이 포함되는데 전체 ACSS결제금액의 98%를 차지한다. 직접정산기관은 캐나다 중앙은행에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캐나다 지급협회 이사회가 지정한다. 직접정산기관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결제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간접정산기관 및 자격을 갖춘 비회원금융기관들의 정산 및 결제까지도 담당한다. 직접정산기관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마다 거래기록은 ACSS에 저장되어 전체 거래금액 및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거래마지막에 입력된 자료는 직접정산기관의 순 포지션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sup>34)</sup> 직접정산기관은 각 영업일 아침동안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전(前) 영업일의 ACSS정산 순 잔고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유한 계정간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개별정산기관의 금융포지션을 조정한다. 그룹정산기관은 수많은 지방 및 중앙신용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그룹정산기관이 되기 위해

29) ACSS 직접 및 그룹정산기관에는 Alberta Treasury Branches #219, Bank of Canada #177, Bank of Montreal #001, Bank of Nova Scotia, The #002, Caisse centrale Desjardins du Québec, La #815,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010, Central 1 Credit Union #869, HSBC Bank Canada #016, Laurentian Bank of Canada #039, National Bank of Canada #006, Royal Bank of Canada #003, Toronto-Dominion Bank, The #004 등 12개 금융기관이 소속되어있다.

30) 직접정산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중앙은행 (The Bank of Canada)에 결제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캐나다 중앙은행에 대부약정(loan facility)을 개설하고 있을 것 셋째, ACSS를 통하여 정산된 총 지급항목규모 중 0.5%의 지급항목을 보유하고 있을 것, 0.5%라는 수치는 By-law의 규정과 일치하게 결정된 것이지만 만약 규칙이 낮은 비율을 규정할 경우는 그 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by-law에서 규정한 기술적, 재정적 및 다른 요구조건을 일치시킬 것 등이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직접정산기관에 해당된다. 또한 매일 거래량(건수)의 99%가 ACSS를 통하여 정산된다고 할지라도 이들 거래금액으로서는 약 12%만이 정산되고 나머지 약 88%는 거액이체시스템(Large Value Transfer System : LVTS)를 통하여 정산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규칙에서 규정한 조건을 직접정산기관이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직접정산기관의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 이사회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철회사실을 모든 회원기관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By-law No.3 (26). 2015년 말 현재 캐나다지급협회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은행 49개, 신탁 및 대부회사 19개, Centrals 13개, 유가증권 딜러 1개, 기타금융기관 6개를 포함하여 114개의 기관이 회원이 등록되어있다.

31) 그룹정산기관은 ACSS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항목을 직접정산기관 및 결제그룹이 지정한 회원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기관 또는 지역 및 중앙신용협동조합그룹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2개의 그룹정산기관에는 Caisse centrale Desjardins du Québec, La #815과 Central 1 Credit Union #869가 존재한다.

32) 다른 CPA회원금융기관들을 위하여 정산 및 결제하는 기관 임. 이 외에 자신의 지급항목을 결제하지만 하나 이상의 지역교환소에 그들을 대표할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그들 결제를 대신하게 하는 비 참여 직접정산기관(Non-Participating Direct Clearer)도 있다.

33)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By-law No.3 (25).

34) [http://www.cdnpay.ca/imis15/Clearing\\_Settlement/Automated\\_Clearing\\_Settle..](http://www.cdnpay.ca/imis15/Clearing_Settlement/Automated_Clearing_Settle..) 2 Feb., 2016.

서는 2개의 그룹정산기관 중 한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정산기관과 그룹정산기관은 정산대리기관이 될 수 있다.

제2참여기관인 간접정산기관도 CPA회원이지만 지급의무의 이행은 각자의 정산대리기관에 개설하고 있는 결제계정을 통해서 캐나다 중앙은행에 결제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가능하다.<sup>35)</sup> 간접정산기관은 캐나다 전체 정산 및 결제 규모 중 약 2%를 담당하고 있으며 10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ACH는 1974년 미국은행협회(America Bankers Association : ABA)내의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잉글랜드 및 어퍼 미드웨스트(Upper Midwest) 지역으로만 NACHA를 구성하여 1978년까지는 2개의 금융기관간에만 지급처리가 가능하였다. 그 후 1987년에 ACH가 지급기관으로 출범하였고 1993년에는 승인 받은 ACH 전문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ACH지급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지역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sup>36)</sup> 특히, 2001년 연방정부가 보증한 금융기관을 직접 참여기관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인터넷과 전화지급을 개시하였고 2009년에 ACH망을 통한 국제거래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직접예탁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및 정부 보조금, 유틸리티 및 주택담보대출, p2p, b2b지급과 같은 전자어음지급 등을 처리하는 FedACH시스템의 참가자에는 원지시인(Originator), 수신인(Receiver), 원지시인의 거래금융기관(Originating Depository Institution : ODI), 수신인의 거래금융기관(Receiving Depository Institution : RDI) 및 운영자(Operator, 서비스 처리기관)가 포함된다. FedACH시스템은 참여자들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동의하면 지급지시의 이행금융기관 없이 단지 금융기관이 원지시인과 원지시인의 예탁은행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edACH의 초기이용자들 대부분은 은행이나 정부였고 개인이나 기업의 이용은 미미하였다.<sup>37)</sup>

참가자별로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원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입력하거나 수신인으로부터 구독료와 같은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수납한다. 수신인은 원지시인에게 ACH서비스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거래승인을 해 준 당사자로서 원지시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결제대금을 납부한다. 원지시인이 연방준비은행의 ACH이체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지시를 원지시인의 예탁은행을 통하여 ACH운영자에게 전송한다. 이때 원지시인의 예탁은행은 수신한 지급지시를 자행 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타행 건은 ACH운영기관에게 송신하는 중개기능을 한다.<sup>38)</sup> 자행 건을 처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ACH운영기관에

35) 간접정산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CPA회원 일 것 둘째, 정산대리기관(직접 또는 그룹정산기관)에 결제계정을 개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급항목의 교환 및 정산할 것 셋째, 정산대리기관과 대부기관을 설립할 것 마지막으로 by-law에서 규정한 적절한 재정적, 기술적 및 다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것 등이다.

36) <http://www.nacha.org/ach-network/timeline>, 5 Feb., 2016.

37) <http://www.nacha.org/ach-network>, 9 Dec., 2015.

가입하여야 한다. 미국의 ACH 운영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은행과 TCH는 상호운영을 통해 ACH서비스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운영기관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수신예탁은행은 ACH운영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금액을 수신인의 계좌에 최종 지급이체하고 그 이체내역을 통지한다.

## IV.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

### 1. 접근수단 및 처리항목

캐나다 ACSS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크게 수표 등 장표기반지급과 전자지급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39)</sup>

첫째, 장표기반 결제수단에도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표는 2천 5백만 z 캐나다달러까지 발행할 수 있고 대부분 수표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때로는 여행자수표, 송금수표(money order), 선물 증명서(gift certificate)등으로도 발행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MICR) 부호화 되어있지 않은 장표기반지급수단 인 Unqualified<sup>40)</sup>, 판독기로 통과될 때 MICR로 부호화 되지 않는 수표 및 MICR선에 흠이 있거나 펜이 스친 수표는 거절되는 컴퓨터 거절(Computer Rejects), 장표송금<sup>41)</sup>(Paper Remittances), 정부지급<sup>42)</sup>(Government Items(Paper), 수표, 여행자수표, 선물증명서 및 송금수표로 교환된 가상 장표지급(Imaged Paper Items) 및 전자적으로 금융기관간에 반환된 장표지급수단인 가상장표반환(Image Paper Returns) 등이 있다.<sup>43)</sup>

둘째, 전자지급방법은 CPA지급망을 이용하여 직접정산기관간에 양자적으로 대량으로 교환된다. 취급수단은 전자지급의 전송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직접예탁항목처럼 자동자금이체파일에서 교환된 신용지급인 AFT지급<sup>44)</sup>, 다음으로 선 수권된 출

38) 이병렬, “유럽의 단일유로화지급지역(SEPA)과 미국의 자동교환정산원(ACH)간의 비교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pp.9-10.

39)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1.1, pp.21-25.

40)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판독할 수 없는 손상된 수표 뿐 아니라 카운트 수표(counter cheques)도 포함된다.

41)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ABM을 경유하여 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된 MICR부호가 있는 기업채권자확인번호(CCIN)에 따른 지급방식 임.

42) 정부수표, 채권상환, 재무부 단기증권 및 구론 등과 같은 캐나다정부가 발행한 장표지급수단 임.

43) [http://www.cdnpay.ca/imis15/eng/Publication/Statistics/eng/res/acss\\_annual\\_archiv...11 Dec., 2015](http://www.cdnpay.ca/imis15/eng/Publication/Statistics/eng/res/acss_annual_archiv...11 Dec., 2015).

44) Michael Tompkins, Sajjad Jafri and Neville Arjani, “The Role of Automated Funds Transfer Payments in Canada’s Declining Use of Cheques,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1, July 2015, pp.1-8.

금처럼 자동자금이체파일에서 교환된 출금이체인 AFT출금, 그리고 출금카드를 이용하는 POS(physical point-of-service)출금 및 지급이체가 있다. 여기에는 POS출금, POS입금, 온라인 출금, 온라인 입금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POS 입금과 POS출금은 출금카드를 이용하고, 온라인 입금 및 온라인 출금은 온라인 POS로 이체하고 있다.<sup>45)</sup> 또한 카드보유자의 거래은행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ABM기계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공유된 ABM망과 공유된 ABM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정하는 ABM조정을 포함하는 ABM거래, 공급자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거액을 공유하거나 자동화형태로 지급 또는 송장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간 전자지급형태인 전자문서교환(EDI), 그리고 마지막으로 CCIN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음지급형태로 이루어진다.<sup>46)</sup>

그리고 캐나다의 ACSS는 고객에 따라 필요한 접근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다르다. 모든 지급관련기업을 포함하여 비 예금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접근수단을 필요로 한다.<sup>47)</sup> 그러나 금융중개업자들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접속 후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접근수준을 달리 요구하고 있다. 즉, 송장정보와 같은 교환기능에 대한 접속기준은 지급정보와 같은 정산기능의 접속기준 보다 낮다.

한편 미국의 FedACH서비스는 채무를 청산하거나 구독료와 같은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수납해야 하는 개인 및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FedACH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크게 지급이체와 출금이체방식 두 가지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체는 연방정부 및 일반기업들의 직원 급여, 연금 및 배당금 등을 수신인의 계좌로 대량 입금시키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리고 출금이체는 수신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보험료, 구독료 그리고 각종 대출금 등을 자동으로 출금하여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48)</sup>

첫째 어음결제방식이다. 여기에는 소비자계정에 상인 및 어음제시인(biller)이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추심하여 이체하는 PPD(Prearranged Payment and Deposit Entries)방식, 수신자의 계정으로 POS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지급을 이행하거나 현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전자터미널에 출금을 지시하는 POS(Point-of-Sale)방식 등이 있다.

45) CPA Rules 2.

46) Michael Tompkins, "Canadian Payment Methods and Trends : 2015",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4, Dec., 2015, pp.5-9.

47) James Chapman & Jonathan Chiu,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2, September 2015, pp.22-23.

48) 이병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ACH와 Fedwire의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3, pp.146-148.

둘째, 전자수표결제방식이 있다. 이 결제방식에는 수표를 온라인상에서 정보화 한 후 ACH 시스템을 통하여 수신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전자수표방식인 POP(Point-of-Purchase Entries)방식, 수표가 제시될 때 당좌계정의 잔액이 수표액면금액보다 부족하여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될 때도 수표발행자의 다른 계정에서 출금할 수 있게 하여 부도수표를 재 제시하는 RDC(Re-presentation of Dishonored Check)방식. 그리고 고객의 수표가 그의 우편함에 도착하면 고객의 계정에서의 한 번에 출금이체 하는 ARC(Accounts Receivable Check Truncation)방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거래인 B2B이체방식으로서 EDI결제방식과 현금집중 및 분배방식인 CCD(Cash Concentrations and Disbursement)방식<sup>49)</sup>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의뢰인이 연방준비은행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있는 수신인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출금하는 서비스인 국가 간 ACH(International or Cross-Boarder ACH)결제방식 등이 이용 중에 있다.

## 2. 정산방법

ACSS서비스는 높은 지급시간대를 가지고 있어 실시간 최종성을 제공하고 일부 국경일을 제외하고 주 7일 일 24시간 운영된다.<sup>50)</sup> 정산은 두가지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장표기반 지급수단의 정산은 직접정산기관 사이에 물리적으로 교환된 지급항목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6개의 각 지역 교환소(Regional Exchange Point : REP)에 당일 저녁에 도착되어 정산될 것이지만 일부 경우에 수표가 발행된 다음 날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51)</sup> 예를 들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못한 수표는 익일에 육필로 처리되어야 한다. 수표가 토요일 등 공휴일에 지점에서 발행되면 정산은 익일 다음 은행영업일에 정산된다. 다음 전자지급의 정산 과정은 인도방법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도 없기 때문에 장표지급수단의 정산과정보다 간결하다. 전자지급의 모든 정산과 교환은 전자적으로 발생되고 ACSS의 기장입력은 지역 데이터센터인 지역교환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데이터센터인 별도의 국립전자결제소(National Electronic Settlement Region : NESR)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장표기반의 정산과 다르다.<sup>52)</sup> 정산과정은 빠르면 오후 1시 늦으면 익일 오전 5시에 직접정산기관이 ACSS에

49) 수신은행은 소비자ACH에서는 지급지시의 전송기능만 수행하지만 기업ACH에서는 결제기능까지도 수행함.

50) 즉, New Year's Day(1월 1일, 금요일), Victoria Day(3월 23일, 금요일), Good Friday(3월 25일, 금요일), Canada Day(7월 1일, 금요일), Labor Day(9월 5일, 월요일), Thanksgiving Day(10월 10일, 월요일), Remembrance Day(11월 11일, 금요일), Christmas Day(12월 25일, 일요일), Boxing Day(12월 26일, 월요일) 등이다.

51) 6개의 지역교환소는 캐나다의 밴쿠버, 캘거리, 위니펙, 토론토, 몬트리올, 헬리팩스에 위치해 있다.

52)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 Guide to Risk in Payment Systems Owned and operated By the CPA", July 2005, pp.15-17.

입력하면 익일 오전 9시 30분경에 예비 순 정산잔고가 계산되고 최종 잔고는 오전 11시에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서 직접정산기관은 6개의 지역교환소 중에서 적어도 한곳의 지역교환소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각 정산기관을 구분하여 전체 수표금액 등에 따라 각 정산기관을 구분하여 ACSS에 입력함으로써 수표흐름을 최적화한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 중앙은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22시 30분 사이에 전날 ACSS 정산 순 포지션을 반영하기위하여 그들의 계정간에 자금을 이동시킴으로서 개별 직접정산기관의 금융포지션을 조정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2시까지 각 개별 직접정산기관을 위한 결제를 마무리하면 결제는 최종적이 된다.<sup>53)</sup> 간접정산기관은 직접정산기관과 동일한 날 직접정산기관에 개설된 결제계정을 통하여 결제의무를 이행한다. 최근 ACSS는 소급결제(retroactive settlement)방식에서 익일결제(next day settlement)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익일결제방식은 소급결제방식보다 결제일 및 금융기관수지표에 보고된 계정성격부분에서 정확하다.<sup>54)</sup>

한편 미국 FedACH시스템을 통해 정산하기위해서 고객은 지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지급이체는 납기일 1-2일 영업일 전 오후 5시까지, 출금이체는 납기일 전 영업일 오후 5시까지 원지시인의 거래 금융기관 앞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급지시를 수신한 원지시인의 거래 금융기관은 지급지시를 당일결제용(Same-Day Settlement or Immediate Settlement)은 오후 2시까지, 일말결제(End of day)용은 오전 2시 15분까지 연방준비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연방준비은행은 출범초기에는 정산수수료를 부과시키지 않았지만 1980년 통화감독법(MCA)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직·간접비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수수료정책은 매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참가기관에게 미리 공지하고 징수한다.

### 3. 위험관리정책 및 책임

캐나다의 ACSS에서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과 대리기관 위험(Agency risk)에 노출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위험은 직접정산기관 상호간에 발생되거나 간접정산기관이 직접정산기관에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며 대리기관위험은 정산 금융기관이 정산대리기관에 유발하는 위험이다.

먼저 직접정산기관 상호간에 유발될 수 있는 거래상대방위험은 1차적 위험으로써 직접정산기관이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은 지급을 이행하여 채무금액이 다

53) CPA Rules 4.

54)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결제의 최종성(finality of settlement)과 지급의 최종성(finality of payment)은 의미가 다르다. 즉, 일반 항목에서의 지급의 최종성은 상환청구(recourse provision)가 소진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항목에서의 지급의 최종성과 동일하지는 않다.

른 직접정산기관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위험이다.<sup>55)</sup> 채무불이행한 당사자의 위험은 완화되었지만 다른 참가기관(직접정산기관)에게 유동성 압력과 손실을 전가시키는 추가적인 위험으로써 지급항목이 처리되지 않거나 매입은행이나 수신인의 거래은행고객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별한 지급항목의 취소가능여부는 직접정산기관, 간접정산기관 및 정산대리기관에 따라 달라져 위험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직접정산기관의 채무불이행은 캐나다 중앙은행에 있는 결제계정의 채무 불이행이 되어 다른 직접 정산기관, 간접 정산기관 및 캐나다 중앙은행에 비례하여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실패(industry failure)의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음 간접정산기관이 직접정산기관에 위험을 부과시킬 수 있다. 간접정산기관에게 정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산대리기관의 일차적인 관심은 간접정산기관의 지급의무의 이행여부 및 위험노출에 있다. 새롭게 참여하는 간접정산기관이 결제계정에 자금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급의무를 이행할 경우 정산대리기관 뿐 아니라 다른 직접정산기관에게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정산대리기관은 간접정산기관으로부터 출금한 자금으로 여전히 지급항목을 채우겠지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위하여 자신의 채무 순 포지션의 감소를 감수함으로써 과다인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거래상대방위험은 간접정산기관이 대규모 금융기관이라면 다른 직접정산기관에 도미노 효과 또는 연쇄반응(Knock on)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CPA 회원들은 새로운 금융기관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을 한 간접정산기관이 POS와 EDI지급거래 둘 다에 순 채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정산기관은 간접정산기관이 그의 결제계정에 불충분한 잔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결제금액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액만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결제시간과 직접연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유동성위험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리기관위험이 존재한다. 직접정산기관은 직접 최종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간접정산기관은 정산대리기관에게 아웃 소싱(outsourcing)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직접정산기관도 간접정산기관의 정산대리기관역할을 수행하면서 위험에

55) 상기위험 이외에도 시스템위험과 시간 갭 위험(Time Gap Risk)이 존재한다. 시스템위험은 지급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효율성 및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급시스템의 참여자가 그의 지급의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참여자들의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도미노 효과가 발생되어 지급시스템에 참여하는 수많은 금융기관을 잠재적 파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다. 또한 시간 갭 위험은 금융기관 간에 거래이행시점과 최종결제시점간의 시간 갭이 존재하여 결제처리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다시 말하면 간접정산기관이 채무를 불이행 한 경우, 간접정산기관의 정산대리기관이 채무불이행을 인지한 시간과 정산대리기관이 간접정산기관의 지급항목을 위하여 ACSS를 통하여 결제를 이행한 시점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시간 갭 위험은 정산대리기관이 간접정산기관의 결제와 관련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추가로 유발시킬 수 있고 간접정산기관은 정산대리기관의 다양한 지급처리시간대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갭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직면하게 되지만 간접정산기관도 정산대리기관이 간접정산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선의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간접정산기관 역시 지급항목을 입력시키면서 정산대리기관에게 시스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간접정산기관이 중요한 위험을 정산대리기관에 부과시키는 경우에 정산대리기관도 간접정산기관에게 단기통지(short notice)서비스를 중지함으로써 대리기관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sup>56)</sup> 즉, 정산대리기관은 간접정산기관이 법적, 금융 및 운영위험을 정산대리기관에게 부과시키거나 정산계약의 실제적 조건을 파기한다면 그의 단기통지와 같은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통지서비스가 중지된다면 간접정산기관이 약정된 시간에 또 다른 대리기관에게 정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지급시스템에 중요한 혼란이 발생 할 것이며 이 혼란은 대규모 간접정산기관이라면 더욱 클 것이다. 직접정산기관은 직접적인 지급준비금부담은 없지만 간접정산기관은 정산대리기관과 계약에 따라 유동성조건에 종속되기 때문에 결제계정에 최소한의 잔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간접정산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정산대리기관과 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기관위험은 간접정산기관이 직접정산기관의 행동을 감독할 수 없거나 대리계약내용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

한편, 미국 FedACH시스템의 공적 운영기관인 연방준비은행과 민간운영기관인 ACH협회 모두 지급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연방준비은행의 위험관리정책(PSR policy)은 지급, 정산, 결제 및 기록장치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촉진하여 재정안정성을 공공이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FedACH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은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그리고 법적위험(Legal risk)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의 구분기준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지와 결제능력유무에 따라 분류되며, 운영위험은 자연재해, 테러리스트 및 사이버공격과 같은 정보보안위협 뿐 아니라 시스템 단수, 누수, 데이터 손실, 사기, 지급지시의 처리능력의 부족, 처리지연 및 착오를 포함하여 내부적인 정보시스템의 하자까지 포함한다. 또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은행감독의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실시하여 은행간 결제 및 지급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회의「규정 F」는 금융기관의 정산과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탁금융기관을 규제하는데 적용된다.<sup>57)</sup>

또한 참가자들의 일중 신용거래 또는 일중 초과인출(Daylight Overdrafts)에서 발생하는 위

56) CPA Rule F5.

57) 12 CFR part 206.

험을 통제하여 지급시스템 및 금융시장 하부구조(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FMI)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sup>58)</sup>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건전한 금융기관들에게 일중신용제공정책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지급시스템의 원만한 기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중 신용거래의 균형들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중 신용거래를 제공하면서 미국연방준비은행들은 예측한 위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정 상황들에서 담보물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들의 연방준비계좌에서 일중 초과인출들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일중 초과인출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담보물에 수수료를 제거하여 자발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일중 초과인출액에 담보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연방준비은행의 위험관리정책을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준수하는지 감시하여 일중 초과인출에 대한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미 ACH협회(NACHA)가 1974년에 구성된 이후 40여년이 지난 현재, ACH지급망은 매년 미화 40조 달러 이상을 거래하여 미국 전자거래의 20%이상을 담당하는 공신력이 있는 지급시스템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 진입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위원회와 같은 결정 그룹이 탄생하면서 오늘날 모두가 인정하는 지급혁신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FedACH는 초기 정부지급에서 탈피하여 출금이체를 포함하여 일시 및 반복지급, 정부, 소비자, 기업간 거래, 국제거래 그리고 지급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참가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하는 지급시스템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3분기에 28억 3천만 건에 미화 10조 4천억 달러를 결제하여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거래건수 면에서는 5.9%, 금액 면에서는 3.9%가 각각 성장하는 등 해마다 그 이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캐나다의 ACSS도 2014년 68억 건에 6조 3천억 캐나다 달러를 정산하였으며 일평균 거래규모가 2천 6백만 건에 247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등 거래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세부내역에서는 거래건수 면에서는 POS출금이체가 가장 많은 전체 57%를 차지하였고 다음 자동차금지급이체(AFT)가 12%, 수표는 1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거래금액면에서는 수표가 아직 가장 많은 48%를 차지하였고 AFT지급이 43%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금융기관에서 미국달러계정으로 인출하지만 결제는 미국에

58) [http://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11/13/2014\\_6\\_Dec\\_2015](http://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11/13/2014_6_Dec_2015).

서 이루어지는 미국 달러대량교환시스템인 USBE와 연계를 통하여 자국 중심의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미국까지 직·간접으로 지급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FedACH와 캐나다의 ACSS는 초기 제한된 참여자 및 서비스제공영역을 초월하여 상대국까지 개인, 기업 및 정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액결제시스템인 FedACH와 ACSS를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주관기관, 중앙은행(지급협회)의 역할 및 취급항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주관기관이 다르다. 캐나다의 소액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는 일평균 2천 6백만 건을 처리하는 ACSS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일평균 3천 7백만 건을 처리하는 연방준비은행의 FedACH와 일평균 1천 9백만 건을 결제하는 정산소 지급회사(TCH)의 전자지급망(EPN) 등으로 이원화되어 결제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미국은 운영기관간 서비스경쟁이 존재하지만, 캐나다는 캐나다 지급협회라는 지배적 운영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지급협회의 역할이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는 소액 전자자금이체를 담당하는 지급협회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ACH협회(NACHA)와 캐나다 지급협회(CPA)는 그 역할이 다르다. 즉, 미국의 ACH협회(NACHA)는 참가자들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회원기관들에게 ACH서비스를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캐나다 지급협회(CPA)는 지배적 운영기관으로서 ACSS시스템을 소유 및 관리할 뿐 아니라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결제시스템에 개입하는 정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수표 등 장표거래를 FedACH 및 EPN과 별도로 수표청산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ACSS에서 수표지급과 전자지급 둘 다를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반면 중계센터의 존재여부 및 다자간 차액결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문제는 동일하다. 그리고 캐나다는 Interac에서, 미국은 ATM·POS네트워크에서 ATM, POS거래를 전자자금이체거래와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sup>59)</sup>

그러나 양 지급시스템이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여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 및 각종 위험 노출을 회피하기

59) <http://www.interac.ca/en/about/our-company.html>, 29 Jan., 2016.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안전성은 지급시스템이 각종 위험(법적, 신용, 유동성, 운영, 경영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여 시장에서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다.

둘째,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가 고객들에게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뿌리 깊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에 부합하는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고객의 이익보장은 이용의 편리성과 용이성 및 프라이버시(privacy)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혁신을 독려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의 힘은 강화되고 지급시스템으로의 진입장벽은 제거시켜 지급시스템의 이용비용을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FedACH와 캐나다의 ACSS가 보편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더욱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규제수준과 지급서비스 제공자들과 최종 고객사이의 통신에 높은 장벽을 철폐시킴과 동시에 원만한 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선급한 일이다.

또한 지급시스템의 결제방식, 신용제공 및 감독자인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 및 구조와 유사하게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법’ 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의 감시권한과 지급결제협회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미국은 경제규모,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운영경험 및 역사가 한국보다 길고 풍부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시스템구축 역사 및 경제규모가 한국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캐나다 중앙은행법’과 별도로 캐나다 지급결제법(CP Act)을 통하여 캐나다 중앙은행, 정부(재무부) 및 캐나다 지급협회 등 3자간의 업무, 감독권한 및 책임한계를 분명히 구분하면서도 금융기관 등 시스템의 참여자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결제메카니즘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서영, “지급결제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3호, 금융결제원, 2011.1.
- \_\_\_\_\_,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5호, 금융결제원, 2011.7.
- \_\_\_\_\_,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원, 2013.7.
- 류창완, “소액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서비스 제공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6호, 금융결제원, 2006.10.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 진재석,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2008.4.
- \_\_\_\_\_,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금융결제원, 2008.4.
- \_\_\_\_\_,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5호, 금융결제원, 2009.1.
- 이병렬, “신 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결제에서의 고객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 국제상학회, 2004.9.
- \_\_\_\_\_,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ACH와 Fedwire의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3.
- \_\_\_\_\_, “국제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및 정책적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3.
- \_\_\_\_\_, “유럽의 단일유로화지급지역(SEPA)과 미국의 자동교환정산원(ACH)간의 비교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 한국은행, “소액결제의 세계 트렌드”, 「지급결제정보」, 2008.8.
- \_\_\_\_\_,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지급결제정보」, 2010.
- \_\_\_\_\_,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1.1.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7호, 금융결제원, 2012.1.

Baxter, Thomas C., Stephanie A. Heller and Paul S. Turner, ABCs of UCC, American Bar Association, 2006.

BIS,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Retail Payments in Selected Countries, 2000.9.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nnual Report, 2014, 2015.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 Guide to Risk in Payment Systems Owned and Operated By the CPA”, July 2005.

Canada Payment Association By-law No.3.

Connor Sean O., “Structural Risks and Benefits of Tiered Arrangements: The ACSS”, January 2003.

Chapman James and Chiu Jonathan.,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2, September 2015.

Dingle James F., “Planning and Evolution: The Story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1980-2002”, A Joint Publication of the Bank of Canada and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May 2003.

CFR, CPA Rules.

Geva,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New York, Matthew Bender, 2003.

Tompkins Michael, “Canadian Payment Methods and Trends : 2015”,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4, Dec., 2015.

Tompkins Michael, Jafri Sajjad and Arjani Neville “The Role of Automated Funds Transfer Payments in Canada’s Declining Use of Cheques,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1, July 2015.

<http://www.canlii.org/en/ca/laws/regu/sor-2003-346>, 11 Jan., 2016.

<http://www.cba.ca/en/media-room/661-safeguard-your-money-how>, 19 Dec., 2015.

<http://www.cdnpay.ca>, 25 Jan., 2016.

<http://cdn.payannualreview.ca>, 5 Dec., 2015.

[http://www.cdnpay.ca/imis15/Clearing\\_Settlement/Automated\\_Clearing\\_Settle..](http://www.cdnpay.ca/imis15/Clearing_Settlement/Automated_Clearing_Settle..) 2 Feb., 2016.

[http://www.cdnpay.ca/imis15/pdf/pdf\\_publications/CPA\\_Annual\\_Report.2014\\_pdf](http://www.cdnpay.ca/imis15/pdf/pdf_publications/CPA_Annual_Report.2014_pdf), 2 Jan., 2016.

[http://www.cdnpay.ca/imis15/eng/Member\\_List/eng/mem/Member\\_List](http://www.cdnpay.ca/imis15/eng/Member_List/eng/mem/Member_List), 22 Jan., 2016.

[http://www.cdnpay.ca/imis15/eng/Publication/annual\\_archiv](http://www.cdnpay.ca/imis15/eng/Publication/annual_archiv), 11 Dec., 2015.

[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s/pfs\\_about.htm](http://www.federalreserve.gov/paymentsystems/pfs_about.htm), 17 Jan., 2016.

<http://www.interac.ca/en/about/our-company.html>, 29 Jan., 2016.

<http://www.nacha.org/ach-network>, 9 Dec., 2015.

<http://www.nacha.org/ach-network/timeline>, 5 Feb., 2016.

<http://www.nacha.org/risk-nacha>, 6 Jan., 2016.

<http://www.nacha.org/ACHNS>, 25 Jan., 2016

## ABSTRACT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ACSS of Canada and FedACH of America as a Electronic Payment System

Byeong-Ryul Lee\*

This paper discusses o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Canada. In particular, I focused on ACSS compare with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Because both of them is a low-value, high-volume retail payment system which their countries represent.

The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is the system through which the vast majority of CPA payment items are cleared, through various payment streams. In 2014, ACSS system cleared approximately 6.8billion payments worth a total value of \$ 44.9 trillion.

While, The FedACH Network are the center of America Commerce, moving more than \$40 trillion each year. That's made up of almost 23 bill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cluding direct deposit via ACH, social security and government benefits, electronic bill payments such as utility and mortgage payments.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and the types of payment items between ACSS and FedAch. Second, I analyzed the status of central bank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ir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 protect their customer from credit risk and financial fraud.

**Key Words** : ACSS, ACH, Payment, Risk

---

\* Changwon University